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원료 사용기준(제한 등) 위반 품목제조보고 수리

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내 용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제품의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이후 7일 이내에 관할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를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식품원료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연도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품목제조 보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식품공전 제2. 1. 2) 식품원료 판단기준 (7), ①, ㉠에 따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 ‘삼지구엽초’는 ‘침출차 및 주류의 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강황’, ‘복령’은 가공 전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50% 미만(정

제수 제외)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공주시(○○과)는 ‘삼지구엽초’가 사용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받은 경우, 부여군(○○○○과)은 ‘강황’ 및 ‘복령’이 사용된 식품의 품목 제조보고를 받은 경우 식품공전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등 2개 업소가 식품 공전에 따라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삼지구엽초’, ‘강황’, ‘복령’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제조하여 품목제조 보고한 ‘○○○○○’, ‘○○○’ 품 목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수리하였다.

[표] 식품원료 사용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수리 내역

관할 기관	업체명	보고일자	품목 유형	품목명	원재료명	감사확인
공주시	○○ ○○○○	2017.6.8	기타 가공품	○○○○○	인삼분말(12.2), ~~~, 금박(0.1), 벌꿀(12.2), 마카분말(8.5), <u>삼지구엽초(7.5)</u> , 오미자분말(4.9)	“원료 사용기준 위반 확인” * 감사기간 중 품목제조보고 변경 조치
부여군	○○○○○ ○(주)	2016.12.14	기타 가공품	○○○(○○)	<u>강황(49), 복령(20)</u> , 유근피분말 (20), 벌꿀(11)	“원료배합 시 50%초과 확인” * 감사기간 중 품목제조보고 중단 조치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공주시장, 부여군수는**

[주의] 식품 품목제조보고 수리 식품원료 사용기준(제한) 준수여부에 대한 확
인을 철저히 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